무배당 KB신간편가입건강보험(16.09)(재가입계약용)
상품요약서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 가입가능나이

가. 1종(간편심사형)

① 최초계약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기 본 계 약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5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특 별 약 관	질병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55세~70세
		5년만기	전기납	55세~75세
		1~9년만기	전기납	(80-보험기간)세
	상해입원일당(4일이상)II(간편가입)【갱신계약】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질병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편가입)【갱신계약】 유사암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6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9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뇌출혈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갱신계약】 암수술비 I(유사암포함)(간편가입)【갱신계약】 암수술비II(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계약】 뇌출혈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5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특 별 약 관	자동차사고벌금(운전자) 자동차사고 벌금II(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운전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III(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운전자)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운전자)II	10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비운전자)	5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② 갱신계약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기 본 계 약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65세~90세
		5년만기	전기납	60세~95세
		1~9년만기	전기납	(100-보험기간)세
특 별 약 관	질병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65세~70세
		5년만기	전기납	60세~75세
		1~9년만기	전기납	(80-보험기간)세
	상해입원일당(4일이상)II(간편가입)【갱신계약】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질병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편가입)【갱신계약】 유사암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65세~90세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6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5년만기	전기납	60세~95세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9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뇌출혈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갱신계약】 암수술비 I(유사암포함)(간편가입)【갱신계약】 암수술비II(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계약】 뇌출혈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1~9년만기	전기납	(100-보험기간)세

주) 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재가입시 재가입전 계약에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세부보장별 소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보장을 포

함)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가입이 불가능함.

2-1. 재가입시 잔여보험기간이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가입가능한 보험기간 중 가장 긴 보험기간을 적용함.

3. 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함.

3-1. 3.에도 불구하고 2-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4. 【갱신계약】은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됨.

4-1.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함.

5. 【갱신계약】의 갱신종료나이는 아래와 같음.

구분	갱신종료나이
질병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80세
그 외	100세

나. 2종(일반심사형)

① 최초계약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기 본 계 약	일반상해사망【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5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특 별 약 관	질병사망【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55세~70세
		5년만기	전기납	55세~75세
		1~9년만기	전기납	(80-보험기간)세
	상해입원일당(4일이상)II【갱신계약】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상해수술비【갱신계약】 질병수술비【갱신계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갱신계약】 유사암진단비【갱신계약】 뇌출혈진단비【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계약】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60일한도)【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90일한도)【갱신계약】 뇌출혈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암수술비 I (유사암포함)【갱신계약】 암수술비II(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갱신계약】 뇌출혈수술비【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갱신계약】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5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특 별 약 관	자동차사고벌금(운전자) 자동차사고 벌금II(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운전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III(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운전자)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10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운전자)II 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비운전자)	5년만기	전기납	55세~80세

② 갱신계약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기 본 계 약	일반상해사망【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65세~90세
		5년만기	전기납	60세~95세
		1~9년만기	전기납	(100-보험기간)세
특 별 약 관	질병사망【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65세~70세
		5년만기	전기납	60세~75세
		1~9년만기	전기납	(80-보험기간)세
	상해입원일당(4일이상)II【갱신계약】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상해수술비【갱신계약】 질병수술비【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65세~90세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갱신계약】 유사암진단비【갱신계약】 뇌출혈진단비【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계약】	5년만기	전기납	60세~95세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60일한도)【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90일한도)【갱신계약】 뇌출혈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갱신계약】 암수술비 I (유사암포함)【갱신계약】 암수술비II(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갱신계약】 뇌출혈수술비【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갱신계약】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1~9년만기	전기납	(100-보험기간)세

주) 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재가입시 재가입전 계약에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세부보장별 소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보장을 포함)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가입이 불가능함.

2-1. 재가입시 잔여보험기간이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가입가능한 보험기간 중 가장 긴 보험기간을 적용함.

3. 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함.

3-1. 3.에도 불구하고 2-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4. 【갱신계약】은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됨.

4-1.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함.

5. 【갱신계약】의 갱신종료나이는 아래와 같음.

구분	갱신종료나이
질병사망【갱신계약】	80세
그 외	100세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① 이 상품은 "무배당 KB신간편가입건강보험(16.09)" 사업방법서 별지 "8.만기재가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재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② 피보험자의 직업 및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기재내용은 계약인수 및 보상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청약 시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하여야 함.

③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과거 사고유무, 건강상태,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음.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담보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하고 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하며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함.

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짐.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⑥ 기타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종 · 2종>

1) "무배당 KB신간편가입건강보험(16.09)" 계약에서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아래 항목을 적용하지 않음.

2) 2종(일반심사형)의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1종(간편심사형)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함.

3)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200만원으로 고정하여 운영함.

4) 아래의 특별약관은 영업용운전자에 한해 가입가능함.

-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운전자)II

5) 아래의 특별약관은 비운전자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함.

- 자동차사고벌금(운전자)
- 자동차사고 벌금II(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운전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III(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운전자)

6)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운전자)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운전자)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7)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비운전자)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비운전자)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1종>

8) 암수술비Ⅰ(유사암포함)(간편가입)【갱신계약】특별약관과 암수술비Ⅱ(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 함.
9)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편가입)【갱신계약】 특별약관과 유사암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10)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6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9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특별약관은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2종>

11) 암수술비Ⅰ(유사암포함)【갱신계약】특별약관과 암수술비Ⅱ(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 함.
12)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갱신계약】 특별약관과 유사암진단비【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13)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60일한도)【갱신계약】,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90일한도)【갱신계약】 특별약관은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갱신계약】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2) 상품의 특이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75%

□ **(적립부분) 공시이율** : "보장성-1701 공시이율"(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

□ **보험기간, 납입기간**

"1) 가입자격제한, □ 가입가능나이"의 표와 같이 적용하며, 각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피보험자의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적립순보험료를 이 상품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로 만기시까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할 수 있음.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

② ①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액의 총 누적액의 한도는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금액의 80%를 한도로 함.

③ 중도인출시 중도인출금액 및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이 감소함.

□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적립보험료는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고,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

□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① 대상

- 【갱신계약】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② 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

가) 【갱신계약】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은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 됨(5년, 10년)

나) 【갱신계약】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갱신시 보험료 통보

-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함.

다) 갱신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함.

③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갱신계약】 에 해당하는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은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사용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각 담보별 갱신 보험기간 동안 적용함.

④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를 적용함.

⑤ 보험료 납입방법

- 【갱신계약】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①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회사는 ①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③ ①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④ 회사는 ①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⑤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 1%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적립보험료는 적용하지 않음.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1종] 간편심사형

□ 기본계약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 선택특약

◇ 상해관련 특별약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상해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가입금액(1사고당)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상해입원일당(4일이상)II (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사고로 4일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3일초과 입원1일당)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주1)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주1)

주)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예시
1급	부상등급A(1~3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300만원
4급	부상등급A(4~14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 ~ 11급		20만원
12 ~ 14급		10만원

◇ 질병관련 특별약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질병사망(간편가입) 【갱신계약】	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질병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질병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1질병당)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간편가입)【갱신계약】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3일초과 입원1일당)
암진단비(유사암주1)제외) (간편가입)【갱신계약】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유사암주1)진단비 (간편가입)【갱신계약】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각각1회한)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제외,4일이상120일한도) (간편가입)【갱신계약】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약관상 명시된 "암의 직접치료"의 정의에 따라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120일한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3일초과 입원1일당)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암요양병원입원일당 (4일이상60일한도) (간편가입)【갱신계약】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4일 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60일한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3일초과 입원1일당)
암요양병원입원일당 (4일이상90일한도) (간편가입)【갱신계약】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4일 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90일한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3일초과 입원1일당)
뇌출혈입원일당(4일이상) (간편가입)【갱신계약】	뇌출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가입금액 (3일초과 입원1일당)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 (4일이상)(간편가입)【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가입금액 (3일초과 입원1일당)
암수술비 I (유사암포함)(간편가입)【갱신계약】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20% (수술1회당)
암수술비 II(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계약】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80% (최초1회한)
뇌출혈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뇌출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수술1회당)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간편가입) 【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수술1회당)

주) 1. 유사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 금액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 금액
자동차사고 벌금II(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비탑승상태의 사고 중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	2천만원 한도 (1사고당)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 60일 한도)	가입금액
운전면허취소보장 (영업용운전자)II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III (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포함)(운전자)	1.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의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1사고당) 단, 비탑승상태의 사고 중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 2.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3.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의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비탑승상태의 사고 중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 4.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의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중 주정차한 이후의 사고는 제외합니다)	5백만원 한도

<table>
<tr><th>보장명</th><th>지 급 사 유</th><th>지급 금액</th></tr>
<tr><td>교통사고처리보장A
(중상해보장확대)
(비탑승중포함)(운전자)</td><td colspan="2">
1.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의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2.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table>
<tr><th>구분</th><th>42일~69일
진단시</th><th>70일~139일
진단시</th><th>140일~174일
진단시</th><th>175일 이상
진단시</th></tr>
<tr><td>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td><td>1천만원</td><td>2천만원</td><td colspan="2">3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td><td>1천만원</td><td>3천만원</td><td colspan="2">5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td><td>1천만원</td><td>4천만원</td><td colspan="2">7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td><td>2천만원</td><td>7천만원</td><td colspan="2">1억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원 기준</td><td>2천만원</td><td>8천만원</td><td>1억원</td><td>1억5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td><td>2천만원</td><td>8천만원</td><td>1억원</td><td>1억5천만원</td></tr>
</table>

3.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의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table>
<tr><th>구분</th><th>보상한도</th></tr>
<tr><td>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td><td>3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td><td>5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td><td>7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td><td>1억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원 기준</td><td>1억5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td><td>2억원</td></tr>
</table>

4.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의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table>
<tr><th>구분</th><th>보상한도</th></tr>
<tr><td>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td><td rowspan="3">3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td></tr>
<tr><td>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td></tr>
<tr><td>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td><td rowspan="2">5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원 기준</td></tr>
<tr><td>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td><td>7천만원</td></tr>
</table>

단, 비탑승상태의 사고 중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하며, 사망 또는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td></tr>
</table>

<table>
<tr><th>보장명</th><th>지 급 사 유</th><th>지급 금액</th></tr>
<tr><td>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td><td colspan="2">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table>
<tr><th>구분</th><th>27일이하 진단시</th><th>28일 ~ 41일 진단시</th></tr>
<tr><td>보험가입금액
3백만원 기준</td><td>50만원</td><td>300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5백만원 기준</td><td>150만원</td><td>500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8백만원 기준</td><td>300만원</td><td>800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r>
</table></td></tr>
<tr><td>의료사고법률비용
【갱신계약】</td><td>보험기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td><td>가입금액 한도</td></tr>
</table>

주) 1. 피해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2종] 일반심사형

□ 기본계약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 선택특약

◇ 상해관련 특별약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상해수술비 【갱신계약】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가입금액(1사고당)
상해입원일당(4일이상)II 【갱신계약】	상해사고로 4일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3일초과 입원1일당)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주1)]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주1)]

주)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상해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예시
1급	부상등급A(1~3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300만원
4급	부상등급A(4~14급)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 ~ 11급		20만원
12 ~ 14급		10만원

◇ 질병관련 특별약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질병사망 【갱신계약】	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질병수술비 【갱신계약】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1질병당)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갱신계약】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3일초과 입원1일당)
암진단비(유사암[주1])제외) 【갱신계약】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유사암[주1])진단비 【갱신계약】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각각1회한)
뇌출혈진단비 【갱신계약】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제외,4일이상120일한도) 【갱신계약】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약관상 명시된 "암의 직접치료"의 정의에 따라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120일한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3일초과 입원1일당)
암요양병원입원일당 (4일이상60일한도) 【갱신계약】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4일 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60일한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3일초과 입원1일당)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암요양병원입원일당 (4일이상90일한도) 【갱신계약】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4일 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90일한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의 20% (3일초과 입원1일당)
뇌출혈입원일당(4일이상) 【갱신계약】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가입금액 (3일초과 입원1일당)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 (4일이상)【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가입금액 (3일초과 입원1일당)
암수술비 I (유사암포함) 【갱신계약】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20% (수술1회당)
암수술비 II(유사암제외,최초1회한) 【갱신계약】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80% (최초1회한)
뇌출혈수술비 【갱신계약】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수술1회당)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수술1회당)

주) 1. 유사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 금액
자동차사고 벌금II(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비탑승상태의 사고 중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	2천만원 한도 (1사고당)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보장명	지 급 사 유	지급 금액
자동차사고벌금(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 60일 한도)	가입금액
운전면허취소보장 (영업용운전자)II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III (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포함)(운전자)	1.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의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1사고당) 단, 비탑승상태의 사고 중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 2.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3.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의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비탑승상태의 사고 중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 4.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의 교통사고(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중 주정차한 이후의 사고는 제외합니다)	5백만원 한도

<table>
<tr><th>보장명</th><th colspan="2">지 급 사 유</th><th>지급 금액</th></tr>
<tr><td>교통사고처리보장A
(중상해보장확대)
(비탑승중포함)(운전자)</td><td colspan="3">1.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의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2.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table>
<tr><th>구분</th><th>42일~69일
진단시</th><th>70일~139일
진단시</th><th>140일~174일
진단시</th><th>175일 이상
진단시</th></tr>
<tr><td>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td><td>1천만원</td><td>2천만원</td><td colspan="2">3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td><td>1천만원</td><td>3천만원</td><td colspan="2">5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td><td>1천만원</td><td>4천만원</td><td colspan="2">7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td><td>2천만원</td><td>7천만원</td><td colspan="2">1억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원 기준</td><td>2천만원</td><td>8천만원</td><td>1억원</td><td>1억5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td><td>2천만원</td><td>8천만원</td><td>1억원</td><td>1억5천만원</td></tr>
</table>
3.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의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table>
<tr><th>구분</th><th>보상한도</th></tr>
<tr><td>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td><td>3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td><td>5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td><td>7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td><td>1억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원 기준</td><td>1억5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td><td>2억원</td></tr>
</table>
4.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의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table>
<tr><th>구분</th><th>보상한도</th></tr>
<tr><td>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td><td rowspan="3">3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td></tr>
<tr><td>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td></tr>
<tr><td>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td><td rowspan="2">5천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원 기준</td></tr>
<tr><td>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td><td>7천만원</td></tr>
</table>
단, 비탑승상태의 사고 중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하며, 사망 또는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td></tr>
</table>

<table>
<tr><th>보장명</th><th>지 급 사 유</th><th>지급 금액</th></tr>
<tr><td>교통사고처리보장A(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운전자)</td><td colspan="2">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table>
<tr><th>구분</th><th>27일이하 진단시</th><th>28일 ~ 41일 진단시</th></tr>
<tr><td>보험가입금액
3백만원 기준</td><td>50만원</td><td>300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5백만원 기준</td><td>150만원</td><td>500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8백만원 기준</td><td>300만원</td><td>800만원</td></tr>
<tr><td>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r>
</table></td></tr>
<tr><td>의료사고법률비용
【갱신계약】</td><td>보험기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td><td>가입금액 한도</td></tr>
</table>

주) 1. 피해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①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실손운전자비용 담보는 실손운전자비용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③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이란?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적립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①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75%입니다.

② 이 상품의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용이율은 이 보험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매월변동)에 연동됩니다.

◦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이율을 말하며,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주1)]과 외부지표금리[주2)]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주) 1.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2.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해당상품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0.2%입니다.

□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용위험률 예시>

[1종] 간편심사형

(기본계약, 상해1급 60세 기준)

보장위험	적용위험률	
	남자	여자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	0.000344	0.000135

[2종] 일반심사형

(기본계약, 상해1급 60세 기준)

보장위험	적용위험률	
	남자	여자
일반상해사망	0.000264	0.000104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라. 보험가격지수

□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 60세, 상해1급, 10년만기 전기납)

보험가격지수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60.0%	165.0%	102.3%	101.6%

마.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_1종(간편심사형)

◎ 가입기준 : 남자 60세, 월납 8만원, 10년만기 전기납
◎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 1,000만원
◎ 선택계약 : 질병사망(간편가입) 1,000만원
상해입원일당(4일이상)II(간편가입) 1만원
질병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 1만원
상해수술비(간편가입) 10만원
질병수술비(간편가입) 1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편가입)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간편가입) 100만원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1,000만원

(단위 : 원, %)

구 분	납 입 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960,000	139,000	14.5	140,000	14.6	140,000	14.6
3년	2,880,000	584,000	20.3	595,000	20.7	595,000	20.7
5년	4,800,000	1,138,000	23.7	1,170,000	24.4	1,170,000	24.4
7년	6,720,000	1,566,000	23.3	1,628,000	24.2	1,628,000	24.2
10년	9,600,000	1,645,000	17.1	1,775,000	18.5	1,775,000	18.5

주) 1. 상기 환급금/환급률은 천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2026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5%, "보장성-1701 공시이율" 1.60% 가정시)

2. 실제 해지시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액,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및 갱신담보의 갱신보험료 변경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0.2%를 적용합니다.

4.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6. 가입 후 10년미만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해약환급금_2종(일반심사형)

◎ 가입기준 : 남자 60세, 월납 8만원, 10년만기 전기납
◎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 2억원
◎ 선택계약 : 질병사망 1,000만원
상해입원일당(4일이상)II 1만원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1만원
상해수술비 10만원
질병수술비 1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 100만원
뇌출혈진단비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0만원

(단위 : 천원, %)

구 분	납 입 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960,000	258,000	27.0	261,000	27.3	261,000	27.3
3년	2,880,000	1,130,000	39.9	1,155,000	40.1	1,155,000	40.1
5년	4,800,000	2,038,000	42.5	2,108,000	43.9	2,108,000	43.9
7년	6,720,000	2,857,000	42.5	2,997,000	44.6	2,997,000	44.6
10년	9,600,000	3,668,000	38.2	3,958,000	41.2	3,958,000	41.2

주) 1. 상기 환급금/환급률은 천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2026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5%, "보장성-1701 공시이율" 1.60% 가정시)

2. 실제 해지시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액,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및 갱신담보의 갱신보험료 변경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0.2%를 적용합니다.
4.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6. 가입 후 10년미만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로서, 자세한 사항은 약관내용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